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창천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상화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3. 27. 선고 2025누8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6. 3. 설립되어 국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4. 비상장법인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전부인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원(1주당 250원)에 취득한 후, 2019. 11. 21. 원고의 최대주주 소외 1의 며느리인 특수관계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위 취득금액과 같은 액수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3. 31. 이 사건 주식 관련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8,4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8. 20.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963,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34,748,121원으로 경정하고, 소득자를 소외 2, 소득금액을 963,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9.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4,972,7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1. 11. 25. 소득자를 소외 2, 소득금액을 963,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text{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text{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text{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div 6$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을 비롯한 그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1항 가액이 아닌 제2항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1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2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

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제2항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에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에 따라 다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가액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원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도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제6호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다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법인은 부실채권의 매입 및 추심업, 유가증권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2006. 2. 3.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잠식 등으로 2012년부터 채권을 모두 매각하여 채권추심업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80% 이상은 유가증권이

차지하고 있었고,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 외에 다른 매출은 없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상장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2013년 이후에는 이 사건 상장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고 이로써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이후에는 2,168,000주만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일 이후 2021. 7. 16.까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이 사건 상장주식 2,16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 2021. 7. 19. 폐업하였으며, 2022. 4. 26. 청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내용과 사업정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일 당시에 향후에는 종전과 유사한 규모로 상장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계획 하에 기존 자산의 정리에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요컨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을 다수 보유하면서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와 유사한 규모의 유가증권을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장래에도 과거 3년간인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익과 비슷한 손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적용법령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	-----	-----

주심	대법관	천대엽
----	-----	-----

	대법관	서경환
--	-----	-----

	대법관	마용주
--	-----	-----